노인학대 예방 교육

Institutions Providing Assistance with Health Professionals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CONTENTS

노인학대 예방 교육

Institutions Providing Assistance with Health Professionals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Ⅰ. 배경 및 목적

Ⅱ. 노인학대 현황

1. 연도별 학대피해 노인수
2. 2018년 노인학대자 유형

Ⅲ. 노인학대 알아보기

1. 노인학대의 특성
2. 노인학대의 유형
3. 노인학대 예측 징후

Ⅳ. 노인학대 신고 시 체크 요소

1. 신고의무자의 역할
2. 신고 시 필요 정보
3.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치 관련법
4. 노인학대 처벌기준
5. 5. 노인학대 신고 관련 Q&A

Ⅴ. 노인보호전문기관

1.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2.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안내
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소개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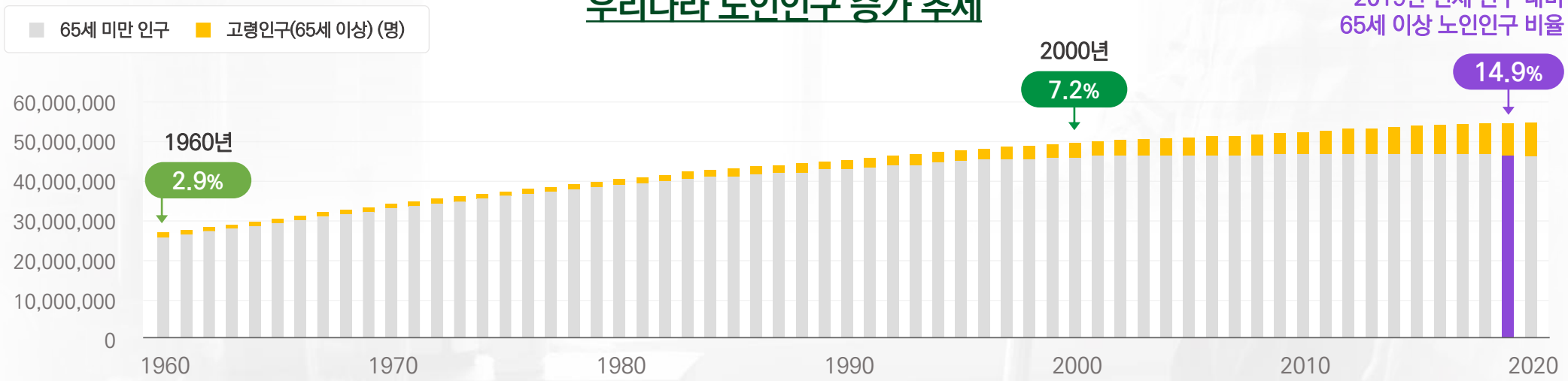
고령인구 증가와 사회변화

| 출처 :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2015-2065)

2021년 현재 고령사회 → 2025년을 전후하여 초고령 사회로 진입 예상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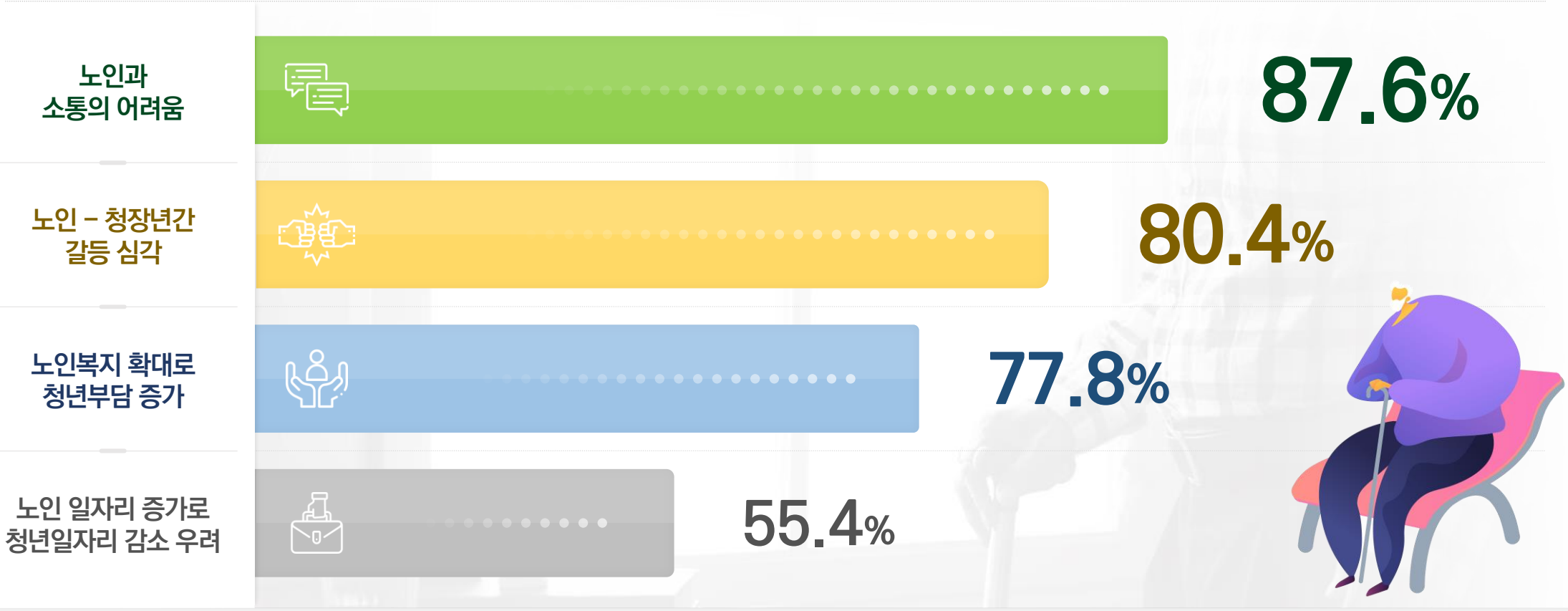
우리나라 노인인구 증가 추세



배경 및 목적

고령인구 증가와 사회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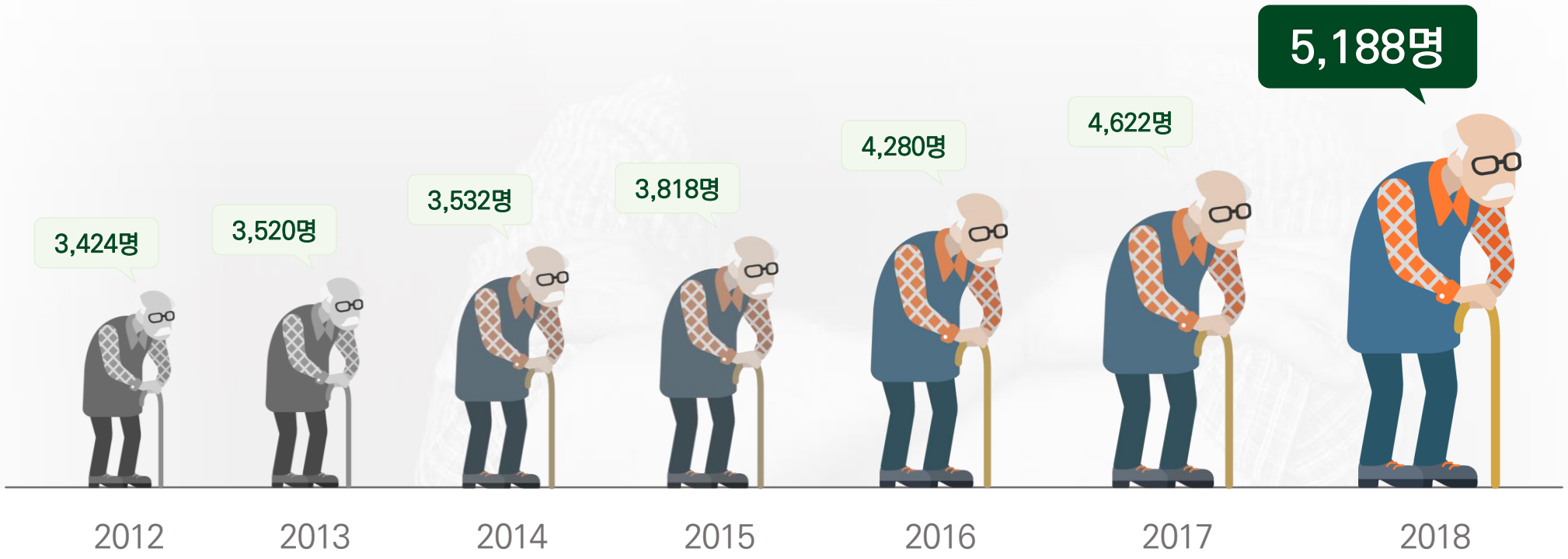
고령사회의 사회문제



노인학대현황

1. 연도별 학대 피해 노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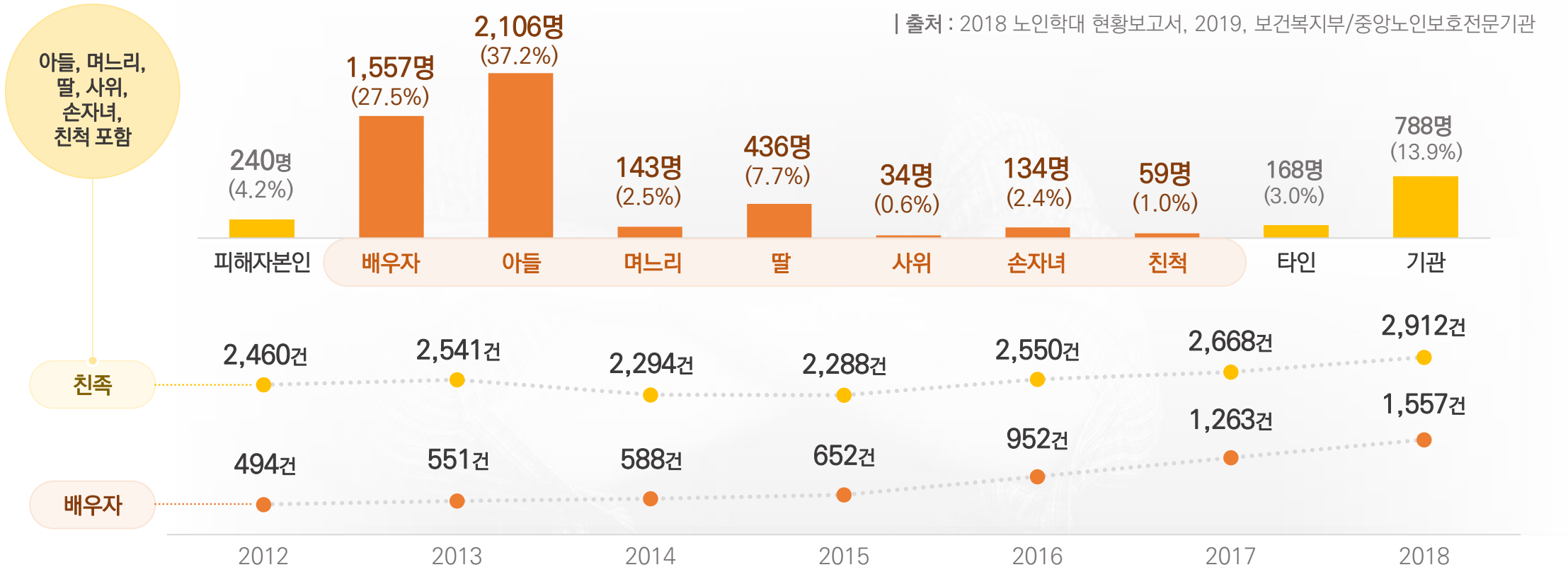
"노인 10명 중 1명 학대 피해자"



노인학대현황

2. 2018 노인 학대자 유형

배우자 및 가족에 의한 학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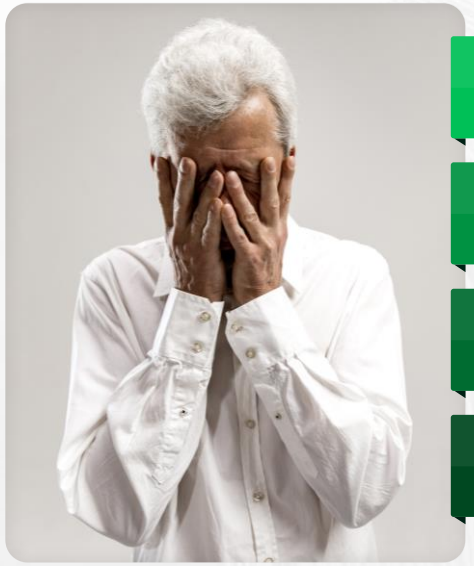
노인학대 알아보기

1. 노인 학대의 특성

-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특성



01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 지속

02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 존재

03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

04 **은폐성** :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생각에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묵인 및 은폐

노인학대 알아보기

2. 노인 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 신체 구타 · 억압 · 위협,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강제로 가두거나 이동 통제,
생존유지를 위한 식사 · 장치 · 약물 등의 단절, 약물 및 주사 강제 복용 · 투입, 강제노동 등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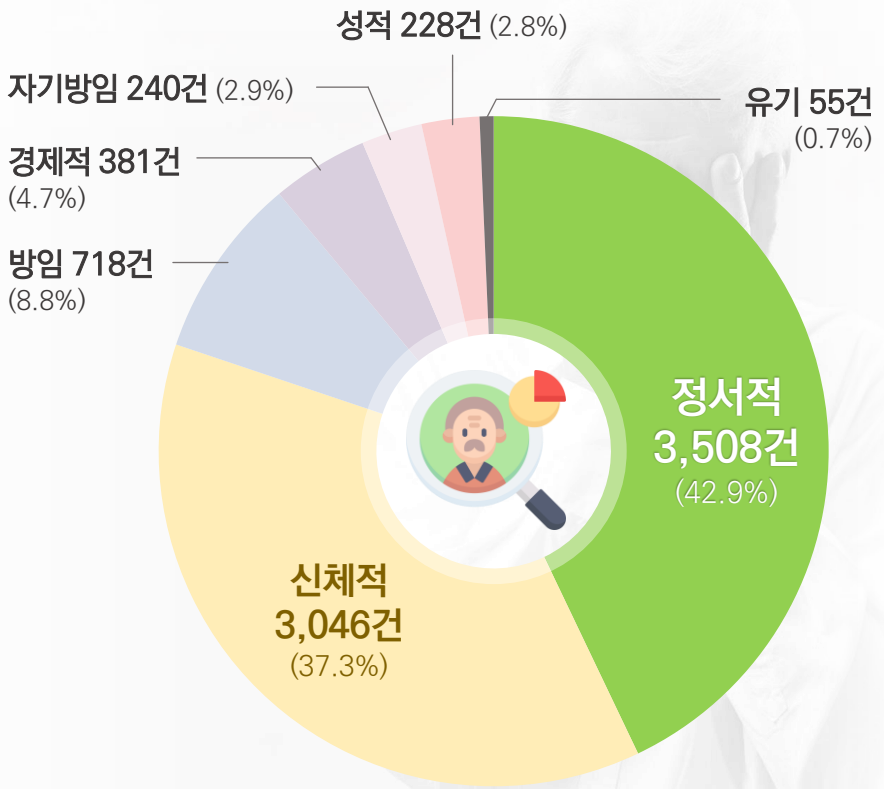
예) 반말, 눈 맞추지 않는 태도, 욕설 등

3) 정서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 성관계 강요 및 시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등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



2. 노인 학대의 유형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노인의 통장을 동의없이 갈취,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 사용 통제 등

5) 방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끼니를 계속 걸러 야위는 상황 등 (자기방임: 스스로 식사 거부,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 등)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의 시설 입소 후 보호자와 연락두절, 낯선장소에 유기 등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3. 노인 학대의 유형별 예측징후

1 신체적 학대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및 영양부족
- 체중 감소
-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 심각

2 정서적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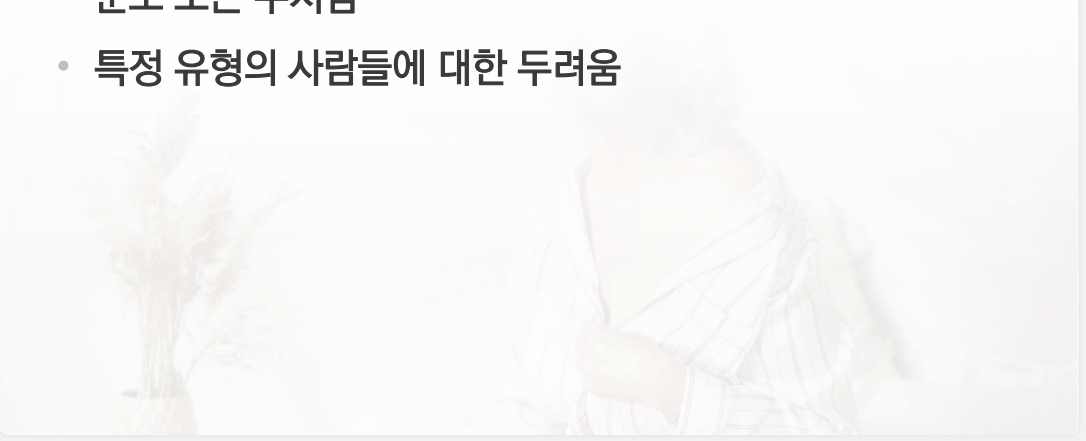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 표현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
-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보는 모습
- 사람과의 대화, 외부활동 등 회피
- 잦은 다툼, 욕설, 큰소리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3. 노인 학대의 유형별 예측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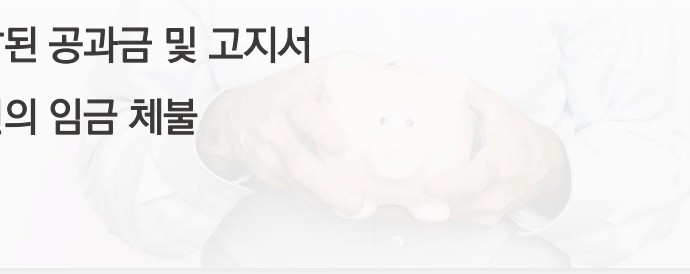
3 성적 학대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훼손된 속옷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 부위의 타박상 혹은 하혈
- 신체의 주요부분 노출
- 성병 감염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
- 노인에게 강요하거나 허락 없이 재산관련 서류 처리
-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부양하지 않을 때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하는 상황
-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기초노령연금 등) 갈취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 개인 귀중품 분실
- 은행계좌에 부적절한 거래 존재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
- 노인의 임금 체불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3. 노인 학대의 유형별 예측징후

5 방임(자기방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 된 상태
- 노인의 건강·주변환경의 안전위험 증후
- 의복 및 이불 등의 청결이 보장되지 않는 주거환경
- 부족한 영양공급으로 인한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활비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
- 노인 스스로의 의료적 처치, 의식주 거부로 인한 생명위험 (자기 방임)

6 유기

-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는 노인의 모습
-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데 버려진 노인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 및 왕래 두절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을 시설 및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노인학대 신고 시 체크 요소

1. 신고의무자의 역할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1.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 · 신고**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

   ※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 :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

2.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3.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조치**
   (예.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및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

노인학대 신고 시 체크 요소

2. 신고 시 필요 정보

1) 신고자 관련 정보

- **신고자 인적사항** : 이름, 현 거주지, 연락처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신고자의 욕구** : 노인 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2) 학대피해노인 관련 정보

- **학대피해노인의 현재상황** : 안전여부, 긴급분리보호여부, 노인의 심신상태 등
- **학대피해노인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 관계 등
- **학대내용**

3) 학대행위자 관련 정보

- **학대행위자 인적사항** : 이름, 성별, 현 거주지, 연락처, 직업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4) 학대 관련 정보

- **학대유형, 학대정도 및 심각성, 학대발생일시,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 기간 등**

5) 시설 관련 정보

- **시설관리 · 운영 상의 문제인지, 시설 종사자의 문제인지. 시설 내 이용자 간의 문제인지 파악**

※ 노인학대가 시설에서 일어난 경우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3.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치 관련법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근거법

- 「노인복지법」

가정폭력으로 인한 학대피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으로 인한 학대피해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취약노인으로서의 학대피해노인 지원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구조법」

노인학대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 관련

-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 「형사소송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학대 신고 시 체크 요소

4. 노인학대 처벌기준

- 「노인복지법」 의거

법률	내용	처벌
제55조의2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5조의3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신설)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망 시)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4. 노인학대 처벌기준

- 「노인복지법」 의거

법률	내용	처벌
제55조의 4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 관련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57조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제61조의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외 타 법률 적용 가능
*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의료기관 운영 및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불가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학대 신고 관련 Q&A

Q1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Q2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 2호)

Q3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노인보호전문기관

1.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01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1.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02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근거하여 **전국 시 · 도에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

• 사업내용

상담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전문상담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교육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인권보호

노인인권 보호사업
- 노인인식 개선사업
- 효행교육

홍보

홍보사업
- 이동상담 실시, 언론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

협력체계구축

협력체계 구축사업
- 중앙 · 지역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1.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03 노인학대 개입과정

전화, 서신 등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상담)

1 신고 · 상담

신고(상담)자로부터 관련 정보 파악

2 정보파악

의심사례 신고, 접수 후 현장조사 및 사정 진행

3 사례접수, 현장조사 및 사정

4 노인학대 사례판정

현장조사 및 사정한 내용을 토대로 일반 사례 또는 학대사례 (응급, 비응급, 잠재)로 판정

5 서비스 계획 및 제공, 사례평가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및 지정 양로 시설 연계, 상담 및 치료 등 사회서비스 제공

6 사례종결 및 사후 관리

사례 종결 후에도 일정기간 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관리(전화 및 방문) 진행

2.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안내

0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18개의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4개월에서 최장 6개월 간 쉼터 입소 가능
- 단, 치매 등의 질환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피해노인이 아닌 노숙인의 경우 입소 불가
-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쉼터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이용 가능

02 학대피해노인보호를 위한 지정 양로시설 운영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쉼터 보호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학대피해노인보호 지정양로시설' 에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
- 입소 의뢰된 학대피해노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양로시설 간 협의를 통해 입소여부 판정 후 입소 가능
- 양로시설 입소 후에도 필요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통한 전문 심리 치료 가능

03 중독, 신체·정신적 문제 등 치료 연계

- 학대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에게 발생하는 중독 및 신체, 정신 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치료, 방문간호, 의료기관 입원 및 입원비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2.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안내

04 학대행위자 상담

- 노인학대 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뿐만 아니라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개입 및 상담 진행
- 학대행위자의 학대유발 요인 파악 및 감소·제거를 위해 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 진행
- 노인 학대행위로 상담 및 교육, 심리 치료 등의 권고를 받은 경우,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진행 가능

05 법률서비스 지원 · 연계

-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한 법률서비스(법률상담연결, 소송지원, 고소고발) 및 가정법률상담소와 연계한 이혼절차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
- 노인 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내 학대 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 지원 및 관내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한 조치

06 이혼절차 정보제공(가정법률상담소)

-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할 때에는 가정법률 상담소 등을 통하여 법적 이혼이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진행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3.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소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근거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전국 광역시 · 도에 설치하여,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진행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

입소대상

-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입소기간

- 4개월 이내 (학대재발의 우려 등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하여 연간 총 6개월 이내)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후 원가정 복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하여 입소 지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지정 양로시설 등 연계

서비스내용

①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②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③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④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출처

Institutions Providing Assistance with Health Professionals

- 의료인 119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교육교재, 2019, 보건복지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신고의무자교육(노인학대예방교육) 전국민대상, 2020,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